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82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문진석・이기헌・김교흥

이건대 · 강준현 · 이정문

복기왕 · 김윤덕 · 양문석

송기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중개대상물을 모 니터링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치 및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 권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조치 결과 통보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조치이행 실적이 제대로 집계 되지 않아 허위매물광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위중

개대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도모하여 허위중개대상물 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4항 등).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인터넷 표시・광고 모	제18조의3(인터넷 표시・광고 모
니터링) ① ~ ③ (생 략)	니터링) ① ~ ③ (현행과 같
	<u></u> 수
<u><신 설></u>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필
	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등록관
	청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⑤</u>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4항</u> 에	<u>⑥</u>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	
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